

본 조사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기관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

※ 일부 문구표현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

2019년도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부 합동 실태조사

※ 실태조사는 연구시설장비 종합 정보시스템(ZEUS)*에 접속하여 입력하는 방식이며, 본 조사표는 참고용으로 제공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 URL : <https://survey.zeus.go.kr/2019>

□ 기관 및 작성자 정보

기관 정보	기 관 명		
	성 명		
작성자 정보	부 서 명		직 위
	연 락 처	(TEL) (H·P)	E-mail @

1. 기관별 장비 관리체계 조사

< 안내문 >

본 조사는 국가 R&D예산으로 구축한 3천만원 이상의 시설장비를 보유한 기관이 표준지침에 따라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 R&D 자원인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시설장비 정보는 귀 기관의 소관 부처와 공유하여 부처 합동으로 기관별 조치·관리할 계획이며, ZEUS에 해당 정보를 반영시켜 국가연구시설장비 정보를 현행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기한 내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별도의 현장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숙지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6조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합니다.

기관에서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기관기본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에 대한 심의·신청사유의 적정성 및 구축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미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에 대하여 단독활용 시설장비의 판정·해제,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선정·해제, 저활용·유휴 및 불용 시설장비의 판정, 활용전환 및 처분, 시설장비의 특성·활용기간·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 및 기타 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결정하여야 합니다.

1. 귀 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까?

- ① 예 [2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6문항으로 이동]

2. 귀 기관에서는 '18. 1. 1. 부터 '18. 12. 31. 기간 동안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운영하였습니까?

- ① 예 [3문항으로 이동] 증빙 (심의위원회 개최 자료 첨부)
- ② 아니오 [4문항으로 이동]

※ 참고

증빙자료

- 기관내 게시판에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안내한 공지사항 등
- 개최계획(안) 또는 개최결과 보고(안) 관련 내부기안문, 개최사진 등

3. 귀 기관에서 '18. 1. 1. 부터 '18. 12. 31. 기간 동안 운영하는 자체장비심의 위원회가 심의한 의결사항을 모두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선택 가능)

[4문항으로 이동]

- ① 신규도입 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설장비의 신규 구축타당성 검토
- ②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구축방법(구매/개발/임대)의 판정
- ③ 3천만원 이상 단독활용 시설장비의 판정·해제
- ④ 3천만원 이상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선정·해제
- ⑤ 3천만원 이상 유희·저활용 및 불용 시설장비의 판정
- ⑥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 활용전환 및 처분의 판정
- ⑦ 기타 (기타 심의사항 :)

4. 귀 기관은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 ① 예 증빙 (운영규정 첨부)
- ② 아니오 [5문항으로 이동]

※ 참고

증빙자료: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전체 자료

*단, 보안 등의 사유로 공개가 불가능한 경우 운영규정의 첫 페이지 또는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의 목적 등이 명기된 주요조항을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음

5. 귀 기관에서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마련하지 않는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7문항으로 이동]

- ① 기관 내 타 규정 준용 증빙 (해당 규정 첨부)
- ② 상위 부처(기관) 규정 준용 증빙 (해당 규정 첨부)
- ③ 운영규정 마련예정 마련예정기간 (YY.MMDD~YY.MMDD)
- ④ 제도에 대한 미숙지
- ⑤ 기타 (사유 :)(필수)

※ 참고

증빙자료: 관련규정 모두제출

- 기관 내 타 규정을 증빙자료로 제출
- 준용상위 부처(기관)명, 규정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규정 전체 또는 주요조항 발췌
- 기관 내 자산관리 규정, 내부기안문 등에서 상위 규정을 따르도록 명기하고 있는 문서

6. 귀 기관에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7문항으로 이동]

- ① 시설장비의 신규구축 수요가 적음
- ② 보유시설장비의 활용관정 수요가 적음
- ③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구성예정
- ④ 기타

구성예정일 (YY.MM.DD)

(사유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2조 제3항에 따라 자체 시설장비 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기관의 장은 ZEUS(또는 NTIS)를 활용하여 시설장비의 구축·등록 현황, 시설장비의 활용상태, 활용범위 및 실적, 시설장비의 처분 현황, 전담운영인력의 고용 현황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장비활용 종합포털)- 공동활용 예약서비스 및 기타 관리기능 제공 중

7. 귀 기관은 시설장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까?

- ① 예 [8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10문항으로 이동]

※ 참고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시설장비의 기획부터 처분까지 전주기 단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단, 예약시스템은 미포함)

8. 귀 기관에서 구축되어 있는 정보시스템을 타 기관 정보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9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11문항으로 이동]

9. 귀 기관에서 정보를 연계하고 있는 타 기관의 시스템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1문항으로 이동]**

기관명	시스템명	URL
NFEC	ZEUS	http://www.zeus.go.kr
...		

10. 귀 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지 않는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1문항으로 이동]**

- ① 장비활용 종합포털(ZEUS)를 통하여 시설장비 관리
- 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예산 부족
- ③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예산 부족
- ④ 수기방식으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
- ⑤ 정보시스템 구축예정
- ⑥ 구축예산 대비 효용성 없음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1조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는 공동 관리규정 제25조제3항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시설장비 해당 항목에 따라 취득후 30일 이내 ZEUS(또는 NTI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귀 기관 시설장비 정보현황>

'17.1.1. ~ '17.12.31. 기간 동안 취득 후 ZEUS에 등록한 전체 시설장비 수	취득 후 30일 이내 ZEUS에 등록한 시설장비	ZEUS 평균등록기간
ZEUS 제공 (점)	ZEUS 제공 (점) ZEUS 제공 (%)	ZEUS 제공 (일)

[평균등록일 30일 이내 시설장비가 '0' 경우 12문항으로 이동]

11. 귀 기관에서 보유한 아래의 시설장비에 대해 시설장비별 30일 이내 등록을 초과한 사유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2문항으로 이동]**

구분	NFEC등록번호	장비명(한글)	ZEUS 등록일수		등록지연 사유
			취득일자 등록일자	등록소요기간 (일)	
3	ZEUS 제공	ZEUS 제공	ZEUS 제공	ZEUS 제공	해당사유 입력 50자 이내
			ZEUS 제공		
4
			...		

12. 귀 기관에서 시설장비 취득 후 ZEUS 등록 시 실제 정보등록을 수행하는 대상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개인) 연구책임자
- ② (개인) 연구참여자
- ③ (개인) 시설장비 운영인력
- ④ (기관) 시설장비 책임관*

* 연구기관 보유 시설장비의 운영관리 책임자

- ⑤ (기관) 시설장비 관리자/담당자**

** 행정부서 소속(ex. 구매관리팀 등)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1조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범위, 상태를 연구기관이 별도로 정한 매년 일정 시기 또는 연구개발사업(과제)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기에 점검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활용범위를 변경하거나 재배치(기관 내 재배치, 타기관 대여 등)하기 위한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합니다.

13. 귀 기관에서 보유한 시설장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상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나 '18년도 정부합동 실태조사 결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 ① 예
- ② 별도실시 (사유 :)
- ② 아니오 (미실시 사유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26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부서장급 1명을 시설장비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제27조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제10조제2항의 구축계획서에 따라 해당 시설장비의 전담운영인력을 확보하고 ZEU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4. 귀 기관은 시설장비책임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까?

- ① 예 [15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16문항으로 이동]

15. 귀 기관이 지정한 시설장비책임관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17문항으로 이동]

구분	①성명	②고용형태	③직위	④연락처	⑤E-mail
1	이서현	정규직	선임급 (과장이상)	02-000-0000	Lee@nar.com
2	김현준	비정규직	책임급 (차장이상)	042-000-0000	Kim@dmnet
...					

※ 참고

- ① 성명: 작성
- ② 고용형태: ①정규직 / ②무기계약직 / ③비정규직 중 택 1
- ③ 직위: ①원장(기관장) / ②부원장(선임부장) / ③부장(부서장) 중 택 1
- ④ 연락처: 작성
- ⑤ E-mail: 작성

16. 귀 기관은 시설장비책임관을 운영하지 않는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17문항으로 이동]

- ① 제도 개정사항 미숙지
- ② 관리시설장비의 소규모
- ③ 시설장비책임관 지정예정 (YY.MMDD) 까지 지정 예정
- ④ 기타 (사유 :)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2조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공동활용규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소관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기관의 장은 ZEUS의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와 자체 온라인 시설장비 예약체계를 연계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음

<귀 기관 공동활용 허용/서비스 시설장비 정보 현황>

※ 귀 기관에서 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허용 시설장비는 (ZEUS 제공)점, 공동활용서비스 시설장비는 (ZEUS 제공)점 입니다.

17. 귀 기관은 기관내 공동활용규정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습니까?

*단,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기관내 결재방식 기준이 있는 경우, 공동활용규정 마련으로 인정

- ① 예 [18문항으로 이동] 증빙 (첨부)
- ② 아니오 [20문항으로 이동]

※ 참고

증빙자료: 공동활용규정 전체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 신청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자 준수 사항
- 시설장비 이용료 산정 기준 및 기관내 거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동활용 시설장비를 통한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지식재산권, 인증 및 성적서 등의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 기타 공동활용 시설장비 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8. 귀 기관은 공동활용시 별도의 웹예약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① 예 [19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21문항으로 이동]

19. 귀 기관에서 공동활용시 이용하는 웹예약시스템 정보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2문항으로 이동]

웹서비스명	웹서비스 URL
직접작성	htt://www.abc.ac.kr/resv

※ 참고 : 웹서비스명 예시 (ZEUS, e-Tube, 자체시스템 등)

20. 귀 기관에서 기관내 공동활용규정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2문항으로 이동]

- ① 상위 부처(기관) 규정 준용 증빙 (첨부)
- ② 제도에 대한 미숙지
- ③ 공동활용규정 마련 예정 마련예정기간 (YY.MMDD~YY.MMDD)
- ④ 기타 (사유 :)(필수)

<p>※ 참고</p> <p>증빙자료: 관련규정 모두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용상위 부처(기관)명, 규정명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규정 전체 또는 주요조항 발췌 - 기관 내 자산관리 규정, 내부기안문 등에서 상위 규정을 따르도록 명기하고 있는 문서
--

21. 귀 기관에서 ZEUS 시스템을 포함한 웹예약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사유를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22문항으로 이동]

- ① 수기방식(이메일, 전화 등)으로 관리가 충분히 가능
- ② 웹기반의 예약서비스 제공 미인지
- ③ 별도의 웹예약시스템 사용예정 사용예정일 (YY.MMDD)
- ③ ZEUS 웹예약시스템 사용예정 사용예정일 (YY.MMDD)
- ⑥ 기타 (사유 :)

22. 귀 기관의 시설장비 관리 애로 및 개선에 관한 의견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시설장비별 활용 · 처분실적 조사

< 안내문 >

본 조사는 국가 R&D예산으로 구축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정도 및 처분 현황을 확인하여 공동활용 실적이 저조한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촉진 및 불용 장비의 타 기관으로의 이전을 유도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동활용 실적조사는 1억원 이상의 공동활용허용 또는 공동활용서비스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하며,

처분 실적조사는 활용범위의 구분 없이 3천만원 이상 모든 시설장비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본 기한 내 조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별도의 현장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숙지하시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2조 제4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공동활용 시설장비의 공동활용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 귀 기관에서 '18. 1. 1. 부터 '18. 12. 31. 기간 동안 1억원 이상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문항으로 이동]

구분	ZEUS 시설장비 등록번호	시설장비명	공동활용 총 횟수		시설장비 1회 운영에 소요되는 가동시간		고장 일수	증빙 자료
			내부	외부	실질가동 시간	보조가동 시간		
1	ZEUS 제공	ZEUS 제공	내부	5	실질가동 시간	6	2	증빙 자료 첨부
			외부	2	보조가동 시간	0.5		

※ 참고

증빙자료: 시설장비별 공동활용 관련 운영일지 첨부

대상시설장비 : 1억원이상 ‘공동활용허용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시설장비’ 모두

조사내용 : 대상시설장비 공동활용 실적

※ 1회 이상 타부서 또는 외부기관 연구자에게 공동활용을 제공한 실적

공동활용총횟수 : ‘18.1.1~’18.12.31 기간동안 공동활용한 전체 횟수

공동활용시간 : 시설장비를 1회 운영 할 때 소요되는 평균시간

- 실질가동시간 : 시험, 분석, 계측, 교육, 생산 등을 위해 시설장비를 실제로 가동한 시간
- 보조가동시간 : 사용 전 시설장비 예열, 유지보수 작업, 사용 후 장치 청소/세척 등을 위해 부수적으로 시설장비를 가동한 시간(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히 켜져 있는 시간 제외)

단, 총 시설장비 가동시간은 연간근무일수 250일 x 8 시간 = 200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연간근무일수: 주5일 x 50주 = 250일)

고장일수 : 시설장비 고장으로 인해 미활용된 기간(일)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35조 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유휴 시설장비를 판정하고 해당 시설장비의 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관 내에서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불용 시설장비는 표준지침 제35조부터 제37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합니다.

- 불용 시설장비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시설장비
- 처분 : 불용 시설장비를 표준지침에 따라 무상양여(ZEUS 공고), 매각, 폐기 순으로 처리한 결과
 - 시설장비 처분절차 : 활용상태 점검 →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한 활용상태 판정(활용·저활용·유휴·불용) → 불용 시설장비에 대해 처분
 - 수요기관 무상양여 기준 : 30일 이상 ZEUS에 공고,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상 ZEUS에 재공고

2. 귀 기관은 '18. 1. 1. 부터 '18. 12. 31. 기간 동안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결정한 시설장비가 있습니까?

- ① 예 [3문항으로 이동]
- ② 아니오 [5문항으로 이동]

3. 귀 기관에서 '18. 1. 1. 부터 '18. 12. 31. 기간 동안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불용결정한 시설장비의 처분실적을 확인하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시설장비수	유형 ① 불용결정 이후 처분완료된 시설장비 (정보확인용)	유형 ② 불용결정 하였으나 처분실적이 입력되지 않은 시설장비 (ZEUS 등록정보 기준)	유형 ③ '18년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실적을 ZEUS에 반영할 시설장비	유형 ④ 신규로 불용결정하고 처분한 시설장비
32 (점)	5 (점)	5 (점)	20 (점)	2 (점) (추가/삭제)

※ 시스템 요구사항

- 시설장비수를 클릭하면 NFEC번호, 시설장비명, 활용상태를 별도의 창(리스트)으로 제공하여야 함
- 유형 ④는 기관 내 보유 시설장비를 검색하고 추가/삭제 할 수 있어야 함

4. 3번 문항의 유형 ②, 유형 ③, 유형 ④ 시설장비에 대하여 처분 세부실적을 확인하고 확정 또는 수정사항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유형구분	NFEC 등록번호	시설 장비명	처분상태	처분상세	조치완료 일자	증빙 자료
1	유형 ②	NFEC-0000 -00-000000	시설 장비1	<input type="checkbox"/> 처분완료	<input type="checkbox"/> 내부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무상양여(부품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ZEUS 공고 <input type="checkbox"/> ZEUS 미공고(사유 :) <input type="checkbox"/> 매각 <input type="checkbox"/> ZEUS 공고 <input type="checkbox"/> ZEUS 미공고(사유 :) <input type="checkbox"/> 폐기 <input type="checkbox"/> ZEUS 공고 <input type="checkbox"/> ZEUS 미공고(사유 :)	'18.00.00.	처분 결과
				<input type="checkbox"/> 처분예정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내부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무상양여(부품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매각 <input type="checkbox"/> 폐기	'19.00.00.	
				<input type="checkbox"/> 결과변경	불용→활용 변경	'18.00.00.	(필수) 자체 장삼위 결과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유 입력 ()	-	
2	유형 ③	NFEC-0000 -00-000000	시설 장비2	<input type="checkbox"/> '18년 실태 조사 결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내부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무상양여(부품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매각 <input type="checkbox"/> 폐기 중 '18년 실태조사 결과 자동제공	'18.00.00.	자동 제공
				<input type="checkbox"/> '18년 실태 조사 결과 변경	<input type="checkbox"/> 활용상태(불용→활용) 변경 <input type="checkbox"/> 처분유형 변경 (기존) (변경) <input type="checkbox"/> 내부재활용 <input type="checkbox"/> 내부재활용 <input type="checkbox"/> 무상양여 <input type="checkbox"/> 무상양여 (부품재 활용) (부품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매각 <input type="checkbox"/> 매각 <input type="checkbox"/> 폐기 <input type="checkbox"/> 폐기	'18.00.00.	(필수) 자체 장삼위 결과
				<input type="checkbox"/> 처분예정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내부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무상양여(부품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매각 <input type="checkbox"/> 폐기	'19.00.00.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유 입력 ()	-	
3	유형 ④	NFEC-0000 -00-000000	시설 장비3	※ 선택없음	<input type="checkbox"/> 내부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무상양여(부품재 활용) <input type="checkbox"/> ZEUS 공고 <input type="checkbox"/> ZEUS 미공고(사유 :) <input type="checkbox"/> 매각 <input type="checkbox"/> ZEUS 공고 <input type="checkbox"/> ZEUS 미공고(사유 :) <input type="checkbox"/> 폐기 <input type="checkbox"/> ZEUS 공고 <input type="checkbox"/> ZEUS 미공고(사유 :)	'18.00.00.	증빙 자료
...

※ 시스템 요구사항

- NFEC등록번호, 시설장비명은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되어야 함
- 처분 결과 값이 존재하는 경우 증빙자료도 함께 제공, 변경시는 증빙자료 필수 제출

※ 참고

- 증빙자료 유형 : (1순위) 자체장비심의위원회 결과, (2순위) 기관 공문, (3순위) 내부기안문
- 필수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 유형 ② 처분완료와 결과변경을 선택한 경우
 - 유형 ③ '18년 실태조사 결과변경을 선택한 경우
 - 유형 ④ 신규로 실적을 입력하려는 경우
- ZEUS 미공고 사유 :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등 타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한 경우 등

5. 귀 기관 시설장비에 관한 공동활용 및 처분 등 업무에 있어서 애로 및 개선 사항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